

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419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5. 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의 개정을 통하여 감사 행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여 신뢰받는 감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양성평등을 위한 성별 구성 규정 (안 제2조)
- 전문분야와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의 직무 일원화 (안 제7조)
- 시민감사관의 제척·기피·회피 사항 명확화 (안 제11조)
- 시민감사관의 감사결과 보고기한 명시 (안 제12조)

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
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
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【붙임 4】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24. 3. 29. ~ 4. 18. 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【붙임 5】
- 방침결정문 : 【붙임 6】

[붙임 1]

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④ 시민감사관의 성별 구성인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지방공무원법 제31조”를 “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자문 요청” 을 “자문”으로 한다.

1. 종합감사, 특정감사 등 시 자체감사 참여 또는 자문
2. 불합리한 제도, 관행의 개선 건의
3. 지역주민의 불편·부당사항과 현안문제 제보
4. 공무원 관련 비위사실 및 불친절 행위의 제보
5.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

제8조제2호 중 “소송중” 을 “소송 중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수행함에 있어” 를 “수행할 때”로 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(제척·기피)” 를 “(제척·기피·회피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감사의 당사자는 시민감사관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감사관에서는 제척 사유 등 해당여부 확인 후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

- ③ 시민감사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감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감사 참여 종료 시까지” 를 “해당 감사 종료 후 7일 이

내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감사관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감사관 김운학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감사팀장 김효식
	담당자 성명·전화	문아름 (행정 2077)

[붙임 2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구성) ① ~ ③ (생 략) ④ 시민감사관의 성별 구성인원은 「여성 발전 기본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른다.	제2조(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시민감사관의 성별 구성인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.
제3조(자격) ① · ② (생 략) ③ <u>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시민감사관이 될 수 없다.</u>	제3조(자격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----- ----- -----.
제7조(직무 및 권한) ① 시민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. 1. 전문분야 시민감사관 가. 행정종합감사 · 특정감사 등 자체감사 시 참여 또는 자문 나.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, 공무원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요구 다. 불합리한 법령 ·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라. 각종 공사의 불편 · 부당 · 위법 행위 제보	제7조(직무 및 권한) ① ----- ----- 1. 종합감사, 특정감사 등 시 자체감사 참여 또는 자문

마. 위험지역이나 시설물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건의
바.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

2. 일반분야 시민감사관

가.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시민불편 · 부당사항과 현안문제 제보
나. 시에서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인 시책의 문제점 등 개선건의
다. 공무원 관련 비위사실 및 불친절 행위의 제보
라.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②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협조 및 자문요청에 응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민감사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감사 · 자문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직무 및 권한 제한)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관여할 수 없다.

2. 불합리한 제도, 관행의 개선 건의

3. 지역주민의 불편 · 부당사항과 현안문제 제보

4. 공무원 관련 비위사실 및 불친절 행위의 제보

5.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

② -----
----- 자문 -----

-----.

제8조(직무 및 권한 제한) -----

--.

1. (생 략)

2. 소송중인 사항과 판결·재결 등에
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

3. ~ 9. (생 략)

제9조(의무) ① (생 략)

② 시민감사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
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.

③ (생 략)

제11조(제척·기피) ① (생 략)

② 시민감사관은 자신이 제1항 각 호
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
경우에는 감사관에게 기피신청을 하
여야 한다.

〈신 설〉

1. (현행과 같음)

2. 소송 중-----

3. ~ 9.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의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수행할 때

- 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제척·기피·회피) ① (현행과
같음)

② 감사의 당사자는 시민감사관에게
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
정한 감사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
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기피
신청을 할 수 있고, 감사관에서는 제
척 사유 등 해당여부 확인 후 기피 여
부를 결정한다.

③ 시민감사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
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스스로 해당 감사에서 회피하여야
한다.

제12조(감사참여 등 처리) ① 시민감사관은 감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사 참여 종료 시까지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· ③ (생략)

제12조(감사참여 등 처리) ① -----

해당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에-----
-----.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제9-419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4. 6. 10.

제 안 자 : 기획행정위원회

□ 수정이유

- 현행대로 전문분야 시민감사관과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을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함.

□ 주요골자

- 시민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을 조정 (안 제7조)

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1. 전문분야 시민감사관

- 가. 행정종합감사·특정감사 등 자체감사 시 참여 또는 자문
- 나.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, 공무원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요구
- 다. 불합리한 법령·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
- 라. 각종 공사의 불편·부당·위법 행위 제보
- 마. 위험지역이나 시설물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건의
- 바.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

2. 일반분야 시민감사관

- 가.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시민불편·부당사항과 현안문제 제보
- 나. 시에서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인 시책의 문제점 등 개선건의
- 다. 공무원 관련 비위사실 및 불친절 행위의 제보
- 라.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	수정안
제7조(직무 및 권한) ① 시민감사관 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. 1. 전문분야 시민감사관 가. 행정종합감사·특정감사 등 자체 감사 시 참여 또는 자문 나.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, 공무원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요구 다. 불합리한 법령·제도에 대한 개 선 건의 라. 각종 공사의 불편·부당·위법 행 위 제보 마. 위험지역이나 시설물 등 재난안 전사고 예방 및 대책건의 바.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2. 일반분야 시민감사관 가.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시민불 편·부당사항과 현안문제 제보 나. 시에서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 인 시책의 문제점 등 개선건의 다. 공무원 관련 비위사실 및 불친 절 행위의 제보 라.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<신 설> <신 설> <신 설>	제7조(직무 및 권한) ① 시민감사관 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. 1. 종합감사, 특정감사 등 시 자체감 사 참여 또는 자문 2. 불합리한 제도, 관행의 개선 건의 3. 지역주민의 불편·부당사 항과 현안문제 제보 4. 공무원 관련 비위사실 및 불친절 행위의 제보 5.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	제7조(직무 및 권한) ① ----- ----- 1. 전문분야 시민감사관 가. 행정종합감사·특정감사 등 자체 감사 시 참여 또는 자문 나.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, 공무원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요구 다. 불합리한 법령·제도에 대한 개 선 건의 라. 각종 공사의 불편·부당·위법 행 위 제보 마. 위험지역이나 시설물 등 재난안 전사고 예방 및 대책건의 바.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2. 일반분야 시민감사관 가.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시민불 편·부당사항과 현안문제 제보 나. 시에서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 인 시책의 문제점 등 개선건의 다. 공무원 관련 비위사실 및 불친 절 행위의 제보 라.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